

◎ 이 용 료 및 기 타 입 소 자 비 용 부 담 관 계 서 류 및 비 용 산 정 내 역 ◎

1. 이 용 료

- * 월 이 용 료 및 그 밖의 비 용 부 담 액 이 용 비 용 은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의 규 정 을 따 른 다.
- * 이 용 자 나 보 호 자 가 개 별 적 으 로 요 구 하 는 물 품 이 나 용 역 을 제 공 하 는 경 우 그 비 용 은 이 용 자 나 보 호 자 가 부 담 한 다.
- * 이 용 료 는 ‘장 기 요 양 급 여 제 공 기 준 및 급 여 비 용 산 정 방 법 등 에 관 한 고 시’에 따 라 산 정 한 다.

2. 서 비 스 제 공 범 위

구 분	공 급 인 력	내 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1인	● <u>신체활동지원</u>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u>일상생활활동지원</u> 가사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등) ● <u>정서적 지원</u>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u>치매특별 5등급</u> 인지활동프로그램, 잔존 능력 유지 향상 도움 서비스 등 ● <u>기타</u> 행동변화, 감염병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안전관리,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3. 이 용 료 변 경 및 절 차

-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 료 및 비 용 변 경 요 구 를 특 별 한 절 차 없 이 방 문 또는 통 신 을 통 하 여 요 구 할 수 있 다.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대 상 자 의 경 우 등 급 이 나 요 양 급 여 수 가 기 준 이 변 경 되 었 을 경 우
 - * 수 급 자 의 건 강 상 태 와 환 경 적 요 인 으 로 변 경 의 요 구 가 있 을 경 우
 - * 이 용 계 약 서 의 계 약 기 간 이 만 료 되 어 재 계 약 을 하 여 야 하 는 경 우
 - * 이 용 에 따 른 이 용 료 는 매 년 관 계 법 및 지 침 에 따 라 변 경 될 수 있 으 며, 변 경 내 용 적 용 전 수

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급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4.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① 본인부담금 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가.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나.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국민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	6%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는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